

시간제학생의 시간제등록운영규정

제 정 1997. 3.

개 정 1999. 3.

개 정 2010. 6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61조에 의거 시간제 학생의 시간제 등록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시간제 학생의 시간제 등록이라 함은 본 대학의 재학생이 아닌 자가 본 대학에 설치된 학부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강함을 말한다.

제3조 (등록자격) 시간제 학생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한 입학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.

제4조 (선발방법) ①선발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학부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③본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강하였던 자가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시간제 등록을 원할 때에는 우선 선발 할 수 있다.

제5조 (등록인원) 등록을 허가하는 인원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6조 (등록허가시기)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1.2학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여름·겨울학기에는 학기 개시일까지로 한다.

제7조 (학점신청 기준) 매 학기 전일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취득 기준학점의 1/2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

제8조 (교육과정) ①시간제 등록 학생의 교육과정과 수업시간은 정규학생과 통합해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정 교과목의 수강을 원하는 시간제 등록 학생이 많을 때에는 이를 따로 개설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간제 학생이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이수하는 것은 제한한다.

제9조 (등록금) 등록금은 수업료, 실험실습비, 학적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학점 당 등록제로 하되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성적증명서 발급) 매 학기마다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.

제11조 (신분변동) 본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을 이수한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을 인정받고 본 대학 편입학 지원자격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본 대학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(행정사항) 시간제등록 학생의 관리 및 관련 기록 관리와 증명서 발급 등은 정규 학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.

제13조 (기타사항) 시간제 학생의 시간제 등록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